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외장		제1990호	2026. 4. 13.(월)
람				

차 례

조 례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386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일부개정조례	———— 1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387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388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389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	———— 5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390호	인천광역시 서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 6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39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8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392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10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393호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	———— 13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외장		
람			제1990호 2026. 4. 13.(월)

차 례

조 례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394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 16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395호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20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396호	인천광역시 서구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 22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397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4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398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 26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399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9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2400호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31

고 시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8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37
------------------	-------------------	---------

[별표 1]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3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 조정 기준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 비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공무 원 중 담당업무가 주로 외 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 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 는 공무원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 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 로 결정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예산법무과”를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로 한다.

제9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실비 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며,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 또는 6년 이상 위촉된 위원은 해당 위원회 잔여 임기로 한다.

한다)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② 문화원의 운영비는 문화원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연구·조사·문화행사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개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와 문화행사 개최 등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협조 등) 구청장은 문화원으로부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문화원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원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상황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에 관련 장부의 열람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도·감독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문화원진흥법」 등 관계 법령 및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폐지되는 문화원진흥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 채무 등 일체에 권리·의무는 일반회계가 승계한다.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의 조기 발견, 권익옹호, 복지수준 향상,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등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정책정보 제공 및 의사소통 지원
2. 법 제23조에 따른 발달장애 조기 발견 및 영유아 지원 사업
3.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 교육 및 심리상담 지원
4. 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자의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
5. 발달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발달장애인 보호 사업
6. 발달장애인 보호자 자조모임 형성 및 활동 지원

제6조(복지시설 등 설치)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장애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개인 정보 등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자립주택”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지원하는 거주 공간을 말한다.

5. “동료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동료 간 상담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 상담을 통해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고 역할 모델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 및 제5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7.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이란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초기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신청) ① 장애인과 그 보호자(임의·법정대리인 등을 포함한다)는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 등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장애인단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4.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
5.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
6. 자립생활에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지원
7.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
8.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 지원
9. 여성장애인의 출산·육아 지원
10.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 및 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의 경우 센터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사회와의 관계)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립생활 교육) 구청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립주택 제공) 구청장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지역사회로의 정

착을 준비하며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자립주택을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구청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실천하고 초기 생활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착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우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우선하여 고려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의 평가) 구청장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센터 및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의 제목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경계선지능인”을 각각 “느린학습자”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경계선지능인”을 각각 “느린학습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부터 제8호(종전의 제7호)까지 중 “경계선지능인”을 각각 “느린학습자”로 한다.

3. 느린학습자 가족 등으로 이루어진 자발적 참여 모임 지원

제7조 중 “경계선지능인”을 “느린학습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호 중 ““경계선지능인”이란”을 ““느린학습자”란”으로 하고,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를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로 같은 조 제2호 중 “경계선지능인”을 “느린학습자”로, “경계선지능인을”을 “느린학습자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경계선지능인”을 “느린학습자”로 한다.

제4조 중 “경계선지능인”을 “느린학습자”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경계선지능인”을 각각 “느린학습자”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경계선지능인”을 각각 “느린학습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부터 제8호(종전의 제7호)까지 중 “경계선지능인”을 각각 “느린학습자”로 한다.

3. 느린학습자 가족 등으로 이루어진 자발적 참여 모임 지원

제7조 중 “경계선지능인”을 “느린학습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제거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수립·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태계교란 생물의 분포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방제 등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사업) 구청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의 분포현황 및 실태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방제·처리 등 관리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 영향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

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점포”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서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 “상인”이란 골목형상점가(지정받고자 하는 구역을 포함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정 구역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당 점포 15개의 비율을 적용한 개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 있어야 하며, 이때 산정된 점포 수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포 수를 산정할 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점포는 제외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의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 또는 해당 구역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2. 해당 구역 안에서 영업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및 상인 명부
3. 해당 구역의 지번 및 면적이 표시된 도면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 요건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지정 변경 신청 등)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구역의 명칭, 면적 또는 상인 조직의 대표자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신청권자가 구청장에게 지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상권컨설팅 및 상인교육 프로그램 지원
5. 홍보사업 및 제반 행사·이벤트 등에 관한 지원 등
 - 가. SNS 서포터즈 운영 관련 실비, 원고료 등 활동비
 - 나. 홍보에 필요한 물품 및 인쇄물 등 구입·제작

다. SNS 홍보·상점가 방문·퀴즈 이벤트 등에 따른 물품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를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 및 정산보고)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인조직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집행,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소비자·경제 관련 활동가
3. 유통산업·마케팅·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도시개발·건축·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준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6-8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4. 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고시내용: 총 9건(건물번호 부여 7건, 폐지 2건)

연번	구분	위치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부여사유
				고시일	부여(폐지) 사유	
1	부여	원당동 10-1 일원	원당대로 1090 (원당동)	26.4.13.	신축	으뜸이 되는 당이라는 뜻의 옛 지명에서 유래
2	부여	대곡동 3-9 외 5필지	도곡로 210-11 (대곡동)	26.4.13.	신축	도치올이라고 불리던 옛지명 활용
3	부여	백석동 51-319	한들로84번길 10-15 (백석동)	26.4.13.	신축	한들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840m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부여	마전동 1061-6	원당대로685번3길 19 (마전동)	26.4.13.	신축	원당대로685번길에서 세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5	부여	가좌동 602-103	중봉대로 160-3 (가좌동)	26.4.13.	신축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금산 싸움에서 7백 의병과 함께 전사한 조헌선생의 호를 따서 제명
6	부여	가좌동 602-27	중봉대로 160 (가좌동)	26.4.13.	신축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금산 싸움에서 7백 의병과 함께 전사한 조헌선생의 호를 따서 제명
7	부여	가정2공공 주택지구 A-2BL	행복2로 30 (가정동)	26.4.13.	신축	행복주택단지의 남쪽에서 두 번째 만나는 도로에서 착안
8	폐지	심곡동 130	국제대로 420(심곡동)	26.4.13.	멸실	청라경제자유구역의 국제적 성장을 염원
9	폐지	심곡동 126	국제대로 416(심곡동)	26.4.13.	멸실	청라경제자유구역의 국제적 성장을 염원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하시거나 서구청 홈페이지(<https://www.seo.incheon.kr>)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4. 13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935호

검단2지구(소로 2-22호선)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검단2지구(소로 2-22호선)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4762)에 비치되었으며,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 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86번지, 마전동 909-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2-22호선, 소2-12호선)
- 명 칭: 검단2지구(소로 2-22호선) 외 1개소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741m²
- 규 모
 - 소2-22호선: 보도포장 L=150m, B=2m,

- 소1-12호선: 차도포장 L=19m, B=3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 소: 인천광역시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 인가일 ~ 2026. 8.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서류의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방법: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본관 4층 도시계획과(☎032-560-4762)

10.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소2-22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편입토지현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소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분할전	분할후										
계		3필지			30,916.6	719							
1	왕길동	687	687	도	826.1	2		인천광역시 서구청					
2	왕길동	산106-4	산106-4	임	24,304	250		인천광역시 서구청					
3	왕길동	686	686	도	2,388	467		인천광역시 서구청					

(소2-12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편입토지현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소유 지분	성명	주소	권리 관계	
		분할전	분할후										
계		1필지			3,398.5	22							
4	마전동	1039	1039	도	3,398.5	22		인천광역시 서구청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6-943호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자동차 검사 장기 미수검 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하고, 같은 법 제24조의2 제3항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 4. 13. ~ 2026. 4. 30. 까지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내용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4. 공고사항
 - 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이 경과한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를 명하였습니다.
 - 나.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2의2호에 따라 운행정지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따라 직권으로 자동차 말소등록이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기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임시운행 하실 수 있으며, 임시운행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서와 자동차 등록증을 휴대해야 합니다.
5.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 032-560-4892)

[붙임] 자동차운행금지명령 공고 대상

연번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사유	운행금지명령 등록일
1	49오9510	모닝	**훈	검사 미필	2026.04.13.
2	55마5804	티볼리	**진	검사 미필	2026.04.13.
3	02모7533	쎬라토	**민	검사 미필	2026.04.13.
4	128가1704	Arteon 2.0 TDI 4Motion	*****)	검사 미필	2026.04.13.
5	58모2925	모하비	*****기	검사 미필	2026.04.13.
6	36수6128	쏘나타 (SONATA)	*****N	검사 미필	2026.04.13.
7	33노4818	GLA220	**재	검사 미필	2026.04.13.
8	811노9449	포터 II (PORTER II)	**철	검사 미필	2026.04.13.
9	145수6670	EQ900	**만	검사 미필	2026.04.13.
10	177저6213	카니발	***** *H	검사 미필	2026.04.13.
11	844소5433	스타리아 (STARIA)	*****업	검사 미필	2026.04.13.
12	51버2481	싼타페(SANTAFE)	**자	검사 미필	2026.04.13.
13	89고7009	포터 II 윙바디 (PORTER II)	**현	검사 미필	2026.04.13.
14	17마4458	트랙커	**석	검사 미필	2026.04.13.
15	817서1511	KCM1톤롱바디카고	**자	검사 미필	2026.04.13.
16	844거8426	포터 II 내장탑차 (PORTER II)	**건	검사 미필	2026.04.13.
17	90어9267	포터 II (PORTER II)	*****선	검사 미필	2026.04.13.
18	60버3240	BMW X5 3.0	*****행	검사 미필	2026.04.13.
19	63고0234	G80	*****선	검사 미필	2026.04.13.
20	62서8022	스파크 1.0 DOHC	**상	검사 미필	2026.04.13.
21	46머1323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GTS	**민	검사 미필	2026.04.13.
22	09도8435	쏘나타(SONATA)	**희	검사 미필	2026.04.13.
23	60고7327	올란도 2.0 디젤	**윤	검사 미필	2026.04.13.
24	85우2317	포터 II (PORTER II)	*****사	검사 미필	2026.04.13.
25	인천86배1420	포터 II 내장탑차 (PORTER II)	**범	검사 미필	2026.04.13.
26	인천32바1657	그랜저(GRANDEUR)	**진	검사 미필	2026.04.13.

연번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사유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27	54루9944	그랜저 (GRANDEUR)	*****M	검사 미필	2026.04.13.
28	36더0241	스파크 1.0	**훈	검사 미필	2026.04.13.
29	인천31로1491	스펙트라링	*****	검사 미필	2026.04.13.
30	262노6720	크루즈 1.4	*****크	검사 미필	2026.04.13.
31	47너4869	SM5	**희	검사 미필	2026.04.13.
32	인천85배1554	포터 II (PORTER II)	**균	검사 미필	2026.04.13.
33	135서6831	Mercedes-Benz A250 4MATIC	*****사	검사 미필	2026.04.13.
34	17수4981	오피러스	**석	검사 미필	2026.04.13.
35	04소4081	레인지로버 벨라 D300	**이	검사 미필	2026.04.13.
36	인천86배1551	붕고III 플러스냉동차	**덕	검사 미필	2026.04.13.